

2021년도 제36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2. 2.(목), 14:00 ~ 16: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16명
 - 심의위원: 박성호 위원장, 강태욱 위원, 권현영 위원, 김경숙 위원, 김민아 위원, 김연희 위원, 노정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오영주 위원, 위정현 위원, 임형주 위원, 최승수 위원,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위원장
2. 전차(제2021-20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심의위원
3. 안건상정	위원장
<보고안건>	
· 제1호: 2021년 심의 현황 및 하반기 주요 심의 사항	
※ 안건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4. 폐회선언	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보고안건

○ 2021년 심의 현황 및 하반기 주요 심의 사항

- 주요내용

- 2021년 심의 현황 및 하반기 주요 심의 사항 보고

2.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안건번호 제2021-172785호는 제2021-309회 제1분과위원회(2021. 11. 1. 개최)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복제·전송하여 권리자가 직접 신고한 사안임.
- 안건번호 제2021-172786호는 제2021-249회 제4분과위원회(2021. 9. 23. 개최)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 블로그를 통하여 일본 영상물(방송)의 웃긴 장면을 모아 게시한 사안임.
- 안건번호 제2021-172787호는 제2021-297회 제1분과위원회(2021. 10. 25. 개최)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 블로그를 통하여 편곡한 악보를 게시한 사안임.
- 안건번호 제2021-172788호는 제2021-326회 제4분과위원회(2021. 11. 11. 개최)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악보 전문 판매 사이트에서 악보를 유료로 판매한 사안임.

- 회의결과

- 안전번호 제2021-172785호는 심의대상 일러스트와 관련한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 및 제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의문이 있으나, 게시자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음이 명백한 점, 저작자인 민원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 등 침해 사실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나 구제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보호원에 신고를 하게 된 점,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고 있는 점, 저작자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해당 웹사이트의 특성상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어 민·형사상 대응 등 대체적 수단을 통한 침해 구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함.
- 안전번호 제2021-172786호 원저작물의 일부를 편집하여 이용하고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거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권고 부결함.
- 안전번호 제2021-172787호 대중가요 가창곡을 피아노 연탄곡으로 편곡한 사안에 대하여는 실연을 매개로 하여야 하는 악보의 특성, 편곡에 의하여 창작성이 개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광고 또는 후원을 통해 영리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이용에 대하여는 권리자가 개별적 판단 하에 직접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부결함.
- 안전번호 제2021-172788호 권리자의 허락없이 원저작물을 복제한 악보를 제작하여 판매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게시자가 이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시장대체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정 및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일괄적인 시정권고보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해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80개 계정에 대해 17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함

- 회의결과

-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 안건 중 중복 청구(모바일 웹하드)된 11개 온라인서비스의 55개 계정은 부결하고 그 외 17개 온라인서비스의 80개 계정은 복제·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였으므로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복제·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 정지 시정권고를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성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6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20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성호 위원장: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5쪽의 권리자명, 6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저작물명, 권리자명, 8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11쪽의 위원명, 14쪽의 권리자명, 저작물명, 15쪽의 위원명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음.
- 참석 위원 전원: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임. 계정 정지 안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박성호 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권리자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저작물명, 위원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계정 정지 시정권고 회의 부분인 16쪽~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보고안건

o 2021년 심의 현황 및 하반기 주요 심의 사항

- 강나래 전문위원이 2021년 심의 현황 및 하반기 주요 심의 사항을 보고함.

4.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 목록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을 제시하면서)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임. 해당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제척 사유 해당 사항이 없음.
- 박성호 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21-172785호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의 '☆☆☆☆☆☆☆☆☆☆'에 2021. 10. 23. "◆◆◆◆◆◆◆◆◆◆"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임.

게시자는 '●●●●●●●●'에서 활동하는 자로 추정되며, 타 갤러리에 '●●●●●●●●' 홍보 목적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음. 해당 게시물은 ●●●●● 관련 일러스트(이하 '심의대상 일러스트'라 함)와 갤러리 주소 및 환영글로 구성되어 있음.

민원인은 자신이 심의대상 일러스트의 저작자이며, 게시자가 자신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원게시물 본문 및 댓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원게시물의 작성자인 "■ ■ ■ ■ ■ ■ ■ ■ ■ ■"가 심의대상 일러스트의 저작자이며, 원게시물을 통하여 해당 일러스트를 최초로 공표한 것으로 추측됨.

또한 앞서 살핀 민원인 신고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은 심의대상 게시물 게시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적이 없으며,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형태의 이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

민원인은 갤러리 운영자의 도움을 받아 게시자 특징을 시도하였고, 이용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임을 공지하는 동시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를 구제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보호원에 침해 신고를 하게 되었음.

심의대상 일러스트와 관련한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서는 의문이 있으나, 게시자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 저작자인 민원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 등 침해 사실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나 구제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보호원에 침해 신고를 하게 된 점, 저작자는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고 있는 점, 저작자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임.

- 박성호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안전번호 제2021-172785호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민원인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심의대상 일러스트의 창작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하여야 함. 예를 들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절차에서는 구글 등 검색을 통하여 유사한 일러스트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침. 심의대상 일러스트에 대하여서도 그러한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원게시물을 제시하면서)원게시물에 따르면 심의대상 일러스트는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MBTI 검사 시에 나오는 ●●●●●캐릭터를 일러스트화한 것임. 해당 캐릭터 자체가 2차창작의 대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색해 보았음. 눈이 크고 머리가 긴 미형의 만화 일러스트 형식으로 표현된 일러스트가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심의대상 일러스트와 유사 또는 동일한 정도의 일러스트는 찾지 못하였음. 이에 저작물성 부분을 별도의 목차로 검토하지는 아니함.
- A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중단 요구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됨.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제133조의3 시정권고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따른 온라인상의 피해확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이후 재판 절차 등을 통하여 구제 받더라도 회복불능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한 제도임. 본 사안의 경우

그러한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강나래 전문위원: 검토 당시에도 그러한 점을 고민하였음. 재산권을 중심으로 회복불능인 손해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합법 시장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부결할 수 있는 사안임.

그러나 최근 온라인 환경은 커뮤니티 사이트, SNS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저작물들이 양산되고 복제되고 있음. 그러한 저작물들의 합법 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복제되고 이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민원인과 같은 저작자들이 그러한 점을 우려하여 해당 커뮤니티 외부로의 저작물 전재, 복제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하는 경우도 다수임. 높은 익명성과 전파성을 가진 커뮤니티 사이트 등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시정권고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가결 의견을 드리게 되었음.

- B 위원: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점이 있어서 전체위원회에 부의 해주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C 위원: 해당 사안은 커뮤니티 사이트 내부의 개인 간 분쟁으로 보이는데, 시정권고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심의위원회가 개입을 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인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위원회에 부의하게 되었음.
- D 위원: 캐리커처 등 일러스트에 대하여 우리 법원의 입장은 확정적

이지 않음. 특히 하급심의 경우 저작물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음. 민원인의 작품이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임.

권리침해자인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입을 하지 않은 익명의 게시자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정보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원인이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권리 침해를 조속하게 구제받기 위하여 보호원에 신고한 민원인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시정권고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B 위원: 심의대상 일러스트가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관점이 다양하므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움. 다만 창작성에 대하여 논의가 선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 자체가 심의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E 위원: 같은 의견임. 창작성 부분을 다투게 되면 결론을 낼 수 없음.

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의 전송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임.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자가 권리 구제를 위하여서는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부담이 큰 탓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임. 개인 권리자의 입장에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정권고 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도 침해 구제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 A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이용자 측을 대변하는 위원과 권리자 측을 대변하는 위원이 골고루 구성되어 있음. 이는 저작권과 관련된 당사자 일방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 판단을 위한 것임. 사법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시정권고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시작하면 시정권고 제도가 전용될 우려가 있고, 제도 정체성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음. 이러한 점 역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정보 공유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특성상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시정권고를 통하여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제도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감함. 다만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하여 복제·전송되는 저작물은 대부분이 합법 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비상업적 저작물인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합법 시장의 부재를 이유로 시정권고 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저작물 혹은 저작물에 이르지 못하는 콘텐츠의 양산 및 복제가 무차별하게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대중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재고할 여지가 없는가 하는 의문임.

- F 위원: 전문위원께서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해 주신 것 같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논의라고 생각됨. 소송이든 심의든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에는 큰 차이가 없음. 타인의 것을 무단으

로 이용하는 것을 마냥 두고 보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가 타당하다는 의견임.

- K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가 의문이라고 하였는데 잠재적인 시장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현재는 커뮤니티 사이트 내부에서 공유되는 저작물이나, 앞으로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지 알 수 없는 상태임.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현 상태에서 심의대상 일러스트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복제될지 가늠하기 어려움.

또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성명불상자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움. 형사고소를 한다 해도 해당 사이트 내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큼.

만약 권리침해자가 심의대상 일러스트를 유사하게 베껴 그린 사안이라면 다르게 볼 여지도 있겠으나 이번 심의 안건은 파일을 그대로 복제하여 전송하였다는 점에서도 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A 위원: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제133조의3 시정권고 제도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함. 해당 제도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 콘텐츠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한국형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음. 불법복제물의 무차별한 확산을 선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것이지 개인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님. 제도가 입법 취지를 벗어나 잘못된 방향성을 취하지 않도록 제도 운용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본 사안의 경우 권리자가 별도의 구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시정권고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생각됨.

- E 위원: 권리자가 개인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침해자인 게시자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청구를 했을 때 청구에 응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음.
- A 위원: 법에 규정된 절차가 있음.
- F 위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시정권고 제도가 지나치게 권리자 입장만 대변하여 이용자에게 족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취지이신데 충분히 이해가 됨. 다만 이 사안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불법성이 있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임.
검토보고의 내용과 같이 명백하게 불법적인 이용인 점, 권리자가 피해 구제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안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 A 위원: 법문상의 표현을 해석할 때는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입법 취지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피해 확산 때문에 사후적으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임을 지적하고 있음.
- F 위원: 법문의 내용이 누가 봐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됨. 본 사안의 경우 그러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박성호 위원장: 법 제133조의3의 적용에 대하여 소극적 견해와 적극적 견해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임. 적극적 견해의 경우 불법복제물의 전송이 명확한 사안에 대하여 제도를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됨.
- C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침해자를 특정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부결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이 사안은 권리침해자의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특이점이 있어 과연 민원인이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더해지는 것으로 보임. 앞으로 우리 심의위원회가 유사한 사안을 심의하게 되는 경우 권리자의 대체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지?
- A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전송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를 거절한 것임. 권리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함.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님.
- B 위원: 개인적으로 법 제133조의3 적용에 대하여 소극적 견해이기도 하나, 해당 사안이 불법복제가 명확하다는 전제 자체에 의문이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주저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일응 저작물성이 명백하고 저작자임이 명백하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일러스트의 저작물성 및 불법복제물이 명백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임.

- D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03조를 통한 권리 구제를 요청한 경험이 있음.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소명하는 과정이 어려움. 민원인은 해당 일러스트를 최초 공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음.

- G 위원: 해당 커뮤니티 자체가 불법복제물이 난립하는 사이트임. 민원인 인적사항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사법기관을 통한 권리 구제를 받기는 어려워 보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개인 간의 분쟁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물 수준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없이 청소년이 만들어 낸 수많은 창작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임. 타인의 창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전송하는 것은 제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 박성호 위원장: 적극적 견해 측에서는, 해당 사안은 권리침해자의 특정이 불가능하여 사법 구제 등 대체적 수단을 통한 침해 구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특이점이 있는 사안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음. 해당 안전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안전번호 제2021-17278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가결: F 위원, E 위원, K 위원, N 위원, O 위원, D 위원, I 위원, M 위

원, G 위원, P 위원, L 위원 / 부결: J 위원, A 위원, Q 위원, C 위원, B 위원)

- 오진해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1-172786호는 블로그 운영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 중 ‘웃긴 장면’들을 모아서 19분 4초 분량으로 편집한 영상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재된 블로그는 ‘○○○’ 관련상품 소개 및 국내외 콘텐츠 소식 등을 게시하며 광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게시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콘텐츠를 게시하여 광고수익을 얻고 있으나, 콘텐츠의 소개영상만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콘텐츠의 전체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감상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이는 광고로 인한 추가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임.

블로그에서 복제·전송중인 콘텐츠는 배경화면 안에 액자 형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삽입하고, 하단에 간단한 해설 자막을 게재하고 있음. 각 ‘웃긴 장면’ 사이에는 짧은 화면전환 효과가 삽입되어 있으며, 각 영상이 정확히 원저작물의 어느 부분에서 발췌한 것인지는 표기되지 않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장편 시리즈물인 ‘○○○’ 전체 중 ‘웃긴 장면’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원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음. 이것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별도의 창작성이 더해진 2차적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성 인정과 무관하게 원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며, 권리자의 허락을 얻었을 것으로도 생각되지 아니함. 다만 이 경우에도 공정이용 해당성 및 시정권고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웃긴 장면’이라는 새로운 목적으로 편집하여 게시하고 있음. 원저작물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그 변형의 정도 또한 거의 없는 점으로 보아 2차적저작물로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으나, 단순한 불법복제물 전체의 복제·전송과는 그 목적과 이용형태에서 차이가 있음. 한편 심의대상 게시물은 각 화당 약 24분 분량인 저작물의 전체를 제공하거나 그 주요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웃긴 장면 모음'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단편적인 장면만을 수집하여 게시하고 있음. 본 게시물 영상이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즉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원저작물의 일부를 편집하여 이용하고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거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여, 보호원의 시정권고보다는 권리자의 직접 대응이 보다 적절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 박성호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안전번호 제2021-172786호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I 위원: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는 해당 영상이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과 편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어 일반적인 데드카피와 같이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뉘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2차적저작물은 아니지만 편집저작물성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J 위원: 편집점과 편집점 사이 한 번에 보여지는 장면의 길이가 어떻

게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영상을 재생하면서)길지 않음.
- K 위원: 해당 영상물은 19분인데 원저작물 전체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원저작물은 각 화당 평균 24분 분량이고, 2021. 11. 26. 기준으로 1,000화까지 방영되어 상당한 분량임.
- A 위원: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안인 일명 '매드무비'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하였음. 이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은 원저작물을 즐기는 일종의 하위문화로 형성되어 있고,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하였음.
- G 위원: 시장대체성이 미미하다는 의견에 동의함. 해당 저작물은 20년에 걸쳐 방영된 방대한 분량인데,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는 것만으로는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본 영상을 시청한 사람은 오히려 원저작물을 찾아보게 될 것임.
- E 위원: 일본에서는 숏폼 형태 이용에 대해 작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음. 권리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임.
- L 위원: 최근 서머리(summary) 산업이나 콘텐츠가 성행이고,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해당 사

안은 그와 다른 형태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 박성호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음. 해당 안전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안전번호 제2021-17278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부결: J 위원, F 위원, E 위원, K 위원, N 위원, O 위원, A 위원, P 위원, D 위원, M 위원, C 위원, G 위원, Q 위원, B 위원, L 위원 / 가결: I 위원)

- 오진해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1-172787호는 블로그를 통하여 국내 가요 ‘★★★★★★’의 피아노 악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악보의 pdf 파일 및 캡처본, 해당 악보를 직접 실연한 유튜브 영상의 임베디드 링크 2개, 직접 작성한 글, 광고 배너로 구성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본문 중 “□□□ □□ □□□ □□□□ □□□□ □□ □□□□□□□□”, “□□ □□□□□□□□ □□□□□□□ □□□□ □□□□□ □□□ □□□□ □□□□!” 등의 표현, 심의대상 블로그의 내용, 악보의 워터마크 등으로 미루어 보아 게시자가 직접 편곡한 악보를 제공 중인 것으로 보임.

해당 악보는 3분 49초 분량의 대중음악 가창곡인 원저작물을 약 2분 10초 분량의 피아노 연탄곡으로 편곡한 것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악보와 상이함.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2건의 광고 배너가 게재되어 있으며, 다수의 캡션이 확인되는바, 적극적인 클릭 유도를 통하여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같은 카테고리의 최근 게시물에서는 후원 계좌를 안내 중인바,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에 영리성이 있다고 불만한 사정이 있음.

안건번호 제2021-172788호는 악보 판매를 위하여 만들어진 쇼핑물 사이트 '◇◇◇◇'에서 피아노 연주곡 '◇◇◇◇◇◇◇◇ ◇◇◇ ◇◇◇◇◇◇◇◇'를 채보한 악보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해당 음악저작물은 저작자 '◇◇◇◇◇◇◇◇◇◇◇◇◇◇◇◇'가 직접 연주한 음원이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 발매되어 있음.

게시자는 '◇◇◇◇'라는 이름으로 피아노 연주 및 교육 등을 하고 있는 자로,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물을 전송하고 있음. 해당 사이트는 게시자가 직접 채보한 악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개설된 쇼핑물로, 입시곡 등의 악보를 3,900~19,900원에 판매하거나 커뮤니티 내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채보를 의뢰받고 있음. 악보는 일반 악보와 '편집본'으로 나뉘어 있는데, 편집본에 대하여 '원곡의 음악 길이를 2분 내외로 줄인 악보'로 설명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의 악보는 이 편집본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6분 28초의 원곡을 2분 22초로 짧게 줄인 편집본으로, 악보는 약 9마디의 견본만이 제시되어 있으나 게시자가 해당 악보를 직접 연주한 동영상의 길이로 미루어보아 실제 채보하여 판매 중인 악곡의 분량 또한 알 수 있음. 동영상의 연주를 원곡 음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길이 외에 편곡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편집본 악보를 16,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구매자의 후기 1건과 Q&A 2건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는 9마디 가량의 악보 견본을 제공하고 있을 뿐

으로 악보의 전송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음. 그러나 악보 쇼핑몰이라는 사이트의 성격 및 구매후기의 내용 등으로 비추어보아 유료결제자에게 악보를 전송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이 판매하는 악보를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인정한다면, 심의대상 게시물 또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저작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주곡의 악보를 개당 6~8유로에 판매하고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한 음악의 악보는 판매하고 있지 않음. 한편 사무처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확인한 결과, '◇◇◇◇'는 음저협과 이용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

우리 저작권법은 '유형물예의 고정'을 저작물 성립의 일반적 요건으로 요구하지 아니함. 음악저작물 또한 악보로 작성되어 고정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것으로, 악보는 이미 성립한 음악저작물의 고정수단에 불과하고 악보 그 자체를 독립한 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음. 따라서 악보를 채보하여 전송하는 것은 해당 악보로 고정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게 될 뿐임.

다만 채보된 음악이 편곡되었고 그 편곡행위에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편곡자에게 2차적저작물에 대한 독립된 권리가 발생하게 됨. 이 경우에도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이 끼치지 아니하므로, 편곡자가 2차적저작물의 작성에 대하여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의 성립과 무관하게 원저작물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음. 이에 비하여 원저작물을 변형 없이 그대로 채보하였거나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개재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원저작물의 복제로 보아야 할 것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용허락없이 원저작물을 이용 중인 것으로 보

임.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음.

안건번호 제2021-172787호의 경우 원저작물과 분량이 상이하나 이는 전체 분량을 피아노 연탄곡 형식으로 편곡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이고, 악보 자체는 무료로 제공중이나 광고 배너, 후원 계좌 안내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영리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 또한 주로 완성된 음원 형태로 이용되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전송한 것이 아닌, 편곡을 가미하여 피아노에 의한 실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공정이용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악보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보호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악보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원저작권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악보의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안건번호 제2021-172788호의 경우 원저작물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3분의 1 가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인용 등이 아닌 단지 연주를 쉽게 하기 위하여 축약한 것에 불과함. 사업자등록된 쇼핑몰을 통한 판매, 즉 직접적인 영리목적으로 작성되었음. 피아노 연주곡을 동일한 피아노 연주곡으로 편곡 없이 채보하였으며, 당해 악곡의 합법시장 악보를 바로 발견할 수 없었으나 저작권자가 다른 악곡의 악보를 직접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하여, 대중가요와 달리 피아노 연주곡의 경우 악보의 가치가 음악저작물의 가치와 보다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중인 점,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심의대상 게시물을 포함하여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저작물을 지속적으로 이용중인 게시자의 게시물인 점은

인정됨.

단 안전번호 제2021-172787호의 경우 실연을 매개로 하여야 하는 악보의 특성, 편곡에 의하여 창작성이 개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광고를 통해 영리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이용에 대하여는 권리자가 개별적 판단 하에 직접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고 일괄적인 시정권고를 통해 확산을 차단하여야 할 대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안전번호 제2021-172788호의 경우 권리자의 허락없이 원저작물을 복제한 악보를 제작하여 판매중이고, 이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장대체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정 및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일괄적인 시정권고보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고의 시정권고로써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박성호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안전번호 제2021-172787호, 172788호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이 건에 대하여 부결 의견임. 악보는 연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음악저작물을 감상하는 형태로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복제 음원의 피해 확산에는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영상저작물의 대사를 번역한 자막 사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됨. 그런 점에서 이 건은 권리자가 직접 통상적인 구제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짐.

- M 위원: 안건번호 제2021-172788호의 경우 시장대체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저는 반대로 시장대체가 좀 어렵다고 보임. 권리자가 음저협에 신탁한 것을 확인하셨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신탁권리자는 아님.
- A 위원: 외국저작자인 것으로 보임. 국적자가 속해있는 집중관리단체에 신탁을 했을 것이고 각국 신탁기관끼리 상호관리를 하게 됨. 해당 안건은 통상적인 사안보다도 권리체계가 복잡한 것으로, 이러한 사안이야말로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됨.
- I 위원: 안건번호 제2021-172787호, 172788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가장 큰 차이점은 안건번호 제2021-172787호는 직접 편곡한 것이며 무료 제공되고 있다는 것임. 광고와 후원 요청이 있지만 악보 자체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 이에 비해 172788호는 편곡 없는 악보가 유료로 판매되고 있음.
- 박성호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음. 해당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안전번호 제2021-17278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부결: K 위원, A 위원, N 위원, M 위원, O 위원, L 위원 / 경고가결: F 위원, E 위원, P 위원, Q 위원, D 위원, I 위원, C 위원, G 위원, B 위원), 안전번호 제2021-172788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경고가결: F 위원, K 위원, N 위원, D 위원, I 위원, M 위원, C 위원, G 위원, O 위원, B 위원, L 위원 / 부결: E 위원, P 위원, A 위원, Q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17278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 2021-172786호, 17278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 2021-172788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25쪽부터 2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중복 청구된 55개 계정은 부결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

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80개 계정에 대해 17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 정지를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5. 폐회 선언

- 박성호 위원장이 제36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6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4. 25.

위원장 박성호

위원 강태욱

위원 권현영

위원 김경숙

위원 김민아

위원 김연희

위원 노정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오영주

위원 위정현

위원 임형주

위원 최승수

위원 홍지만